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소개합니다

시각장애인 안내견

시각장애인 안내견(Guide Dog)



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
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입니다
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어디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

장애인 보조견 관련 법

장애인 복지법 제40조(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· 보급 지원 등)
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
공공장소,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
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장애인 복지법 제90조(과태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3.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,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
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

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차별행위)
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6.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
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

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대하는 에티켓

출처: 삼성화재안내견학교

- 허락 없이 만지거나 부르지 말아 주세요
- 절대로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
- 사진을 찍지 말아 주세요
-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을 환영해주세요
- 위급상황시, 먼저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주세요



KNU 장애학생지원센터
KNU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